

항제1호가목 신설)

- (1) 금융기관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만을 지배할 수 있어 사모전문투자회사와 같이 등록·신고만으로 금융업을 영위하는 일반 금융회사를 지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 (2) 금융기관이 지배할 수 있는 다른 회사의 범위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에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확대함.
- (3) 금융기관이 일반 금융회사에 속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주도적으로 설립할 수 있게 되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나. 금융기관의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특수목적회사 지배 허용(영 제6조제1항제1호나목 신설)

-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을 위하여 설립되는 특수목적회사는 일종의 투자기구이나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금융기관이 특수목적회사에 최대출자자로 참여할 수 없

는 문제가 있음.

- (2) 금융기관이 지배할 수 있는 다른 회사의 범위에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을 위하여 설립되는 특수목적회사를 추가함.
- (3) 금융기관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어 민간투자사업간 경쟁이 촉진되고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인

2005년 5월26일

국무총리 이 해 찬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한 덕 수

○대통령령 제18834호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을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제3항 본문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이하 “계열회사”라 한다)의 최대출자자”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계열회사(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제외 하며, 이하 “계열회사”라 한다)의 최대출자자[계열회사가 「간접투자자 산 운용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사모투자전문회 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로 하 며, 동항에 제1호 내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 한 경우 그 다른 국내회사
2. 「여성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설립된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다른 국내회사
3.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투자한 기업의 가치를 높여 그 수익을 사원

에게 배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다른 회사

4. 자회사등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의 규정 에 따라 주무관청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영위 하기 위한 회사(「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회사 에 한한다)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회사

제5조제1항제4호 본문중 “증권거래법”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으 로 하고, 동호 본문 및 단서중 “협회등록법인”을 각각 “코스닥상장법 인”으로 하며, 동조제5호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 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 화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7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다만, 편입대상회사가 사모투자전문회사인 경우에는 자회사등이 아 닌 유한책임사원의 성명 또는 명칭은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손자회사를 편입하는 경우”를 “손자회사를 편입하는 경우(자회사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협회등록법인”을 “코스닥상장법인”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각목외의 부분중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을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로,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이하 “보험사업자”라 한다)”를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로 하고, 동호가목 내지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자회사가 은행 또는 종합금융회사인 경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정보업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자(이하 “선물업자”라 한다),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자문회사(이하 “투자자문회사”라 한다) 및 자산운용회사(이하 “자산운용회사”라 한다)

나. 자회사가 증권회사인 경우 : 자산운용회사, 투자자문회사 및 선물업자

다. 자회사가 보험회사인 경우 : 자산운용회사 및 「보험업법」 제11

조제1항제3호가목의 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
제17조제1항제11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2호를 삭제한다.

11.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13.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3제4항중 “증권거래법”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으로, “협회중개시장”을 “코스닥시장”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신용공여(제24조제2항 각호의 구분에 의한 신용공여를 말한다)”를 “신용공여(제24조제2항 각호의 구분에 의한 신용공여 및 제1항제2호라목에 의한 출자를 말한다)”로 한다.

라.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출자하는 경우

제39조제4항중 “세입징수관의 사무처리”를 “국고금관리법령의 수입금징수”로 하고,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제기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별표 2의 제1호나목중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신용불량자”를 “금융

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자”로 한다.

제5조제5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 동항제1호·제2호 각목외의 부분, 동항제2호가목·나목, 동항제3호 및 동조제6항 단서중 “협회등록법인”을 각각 “코스닥상장법인”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4호 본문 및 단서중 “협회등록법인”을 각각 “코스닥상장법인”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항중 “금융지주회사법”을 각각 “「금융지주회사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법률”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제3항제2호중 “예금자보호법”을 “「예금자보호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 관한법률”을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4호중 “한국산업은행법”을 “「한국산업은행법」”으로 하고, 동항제5호 본문중 “상법”을 “「상법」”

으로 한다.

제5조제5항제1호, 동항제2호가목·나목, 동항제3호, 동조제6항 본문 및 단서중 “증권거래법시행령”을 각각 “「증권거래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중 “예금자보호법”을 “「예금자보호법」”으로 한다.

제6조의3제1항 단서중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내지 제10호 및 제14호 내지 제3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은행법」
2. 「은행법」
3. 「한국산업은행법」
4. 「중소기업은행법」
5. 「장기신용은행법」
6. 「한국수출입은행법」
7. 「증권거래법」
8. 「보험업법」

9.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10. 「신탁업법」
14. 「여신전문금융업법」
15. 「신용보증기금법」
16. 「기술신용보증기금법」
17. 「신용협동조합법」
18. 「농업협동조합법」
19. 「수산업협동조합법」
20. 「새마을금고법」
21.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2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3. 「선물거래법」
24. 「외국환거래법」
25.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26.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7.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
28.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29.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30. 「외국인투자촉진법」
 3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3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33. 「예금자보호법」
 3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제17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2호 및 제18조제1호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각각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 제2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한다.
- 제22조제1항제1호중 “회사정리법”을 “회사정리법”으로, “화의법”을 “화의법”으로 한다.
-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중 “은행법”을 각각 “은행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중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을 각각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 제24조의2제4항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한다.

제24조의5제1항제3호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중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예금자보호법”을 “「예금자보호법」”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9조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3호중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2조제3항제4호중 “상법”을 “「상법」”으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3조의2제1항중 “증권거래법시행령”을 “「증권거래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공인회계사법”을 “「공인회계사법」”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개정이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개정(법률 제7221호, 2004. 10. 5. 공포, 2004. 12. 6. 시행)되어 도입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는 특수목적회사를 손자회사 등으로 지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지주회사 등의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지배(영 제2조 제3항)

- (1) 합자회사인 사모투자전문회사는 무한책임을 부담하는 업무집행사원이 별도로 있으므로 투자자에 불과한 유한책임사원이 최다출자자라고 하더라도 금융지주회사 등이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지배하고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준으로 지배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

는 문제가 있음.

(2)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하여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업무집행사원인 경우에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지배하는 것으로 함.

(3)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지배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명확해짐에 따라 금융지주회사 등의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참여가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됨.

나. 금융지주회사 등의 지배 범위(영 제2조제3항제4호 신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을 위해 설립되는 특수목적회사는 일종의 투자기구이나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이를 지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지정받은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특수목적회사를 금융지주회사 등이 지배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대상에서 제외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특수목적회사

의 최대출자자가 되더라도 금융지주회사 등의 지배를 받는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함.

(3)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은행, 보험 등 금융기관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다. 손자회사로 편입된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하여 다른 자회사의 출자 허용(영 제27조제1항제2호라목 신설)

(1)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유한책임사원으로 출자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투자와 동일한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환출자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 등에 대한 출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이를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2)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자회사에 속하는 손자회사인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유한책임사원으로 출자하는 것을 허용함.

(3) 사모전문투자회사가 편입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다른 자회사로부터 자금조달이 가능하게 되어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